

2024년 기윤실 회원총회 회의록

1. 일시 : 2024년 2월 6일(화) 20:35~21:15
2. 장소 : 기윤실 동네극장(서울 동대문구 안암로6길 19 지하)
3. 재적 및 출석

- 임원 : 재적인원 30명 중 참석 9명, 위임 13명(총 22명)

- 참석 : 권장희, 박제우, 배종석, 백종국, 왕보현, 이병주, 이의용, 정병오, 조성돈
- 위임 : 권혁률, 김정태, 김홍섭, 방선기, 손은실, 송인수, 유해신, 임성빈, 장동민, 정현구, 조주희, 조홍식, 최규창

- 회원 : 재적인원 646명 중 참석 19명, 위임 416명(총 435명)
- 비회원 배석 : 16명

- 의장(사회자) : 백종국 이사장
- 안건 : 2023년 사업 및 결산 보고, 2024년 사업 및 예산 계획, 임원 개선, 정관 개정

[총회 개회]

- ▶ 백종국 의장이 정관 1절 10조¹⁾에 의거 임원 및 회원 점명을 하고, 임원 재적 30명 중 9명 참석, 13명 위임(총 22명), 회원 재적 646명 중 19명 참석, 416명 위임(총 435명)하여 정관 13조²⁾에 의거, 2024년 기윤실 회원총회 개회를 선포하다.
- 백종국 의장이 찬성, 반대, 질문 등 의사표시 방법을 안내하다.
- 백종국 의장이 회순 및 전 회의록 채택에 여부를 묻다.
- ▶ 만장일치로 채택하기로 하다.

[2023년 사업 · 결산 · 감사(회계/업무) 보고]

- 김현아 사무처장이 2023년 사업 · 결산 · 회계/업무감사 내용을 보고하다.
- 김현아 사무처장이 2023년 업무감사 특이사항으로, 2023년 정기총회 때 의결한 정관 제 10조, 13조 개정과 관련하여, 당시 조항 해석의 오류로 정관 개정에 필요한 재적회원 2/3 출석 요건을 성립하지 못한 채 정관 개정안을 의결하여 해당 의결이 무효처리가 되었다고 보고하다. 따라서 이번 2024년 총회에서 해당 결의의 하자를 치유하고 정관 10조, 13조 개정안을 안건으로 재상정할 예정이라고 보고하다.
- 백종국 의장이 2023년 사업 · 결산 · 회계/업무감사 보고에 대해 채택 여부를 묻다.
- ▶ 만장일치로 채택하기로 하다.

1) 1절 10조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본회 임원과 본회의 6개월 이상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한 회원으로 구성한다.

2) 1절 13조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정관 제12조 ②, ③항은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안건1 : 정관 개정안³⁾]

- 김현아 사무처장이 총회 의사정족수 관련 조항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다 (정관 제 10조, 13조)

현행 정관 조항

- ▲ 기윤실 정관 제10조(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본회 임원과 본회의 6개월 이상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한 회원**으로 한다."
- ▲ 기윤실 정관 제13조(정족수)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정관 제12조 ②, ③항은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1) 정관 제13조의 총회 의사정족수인 '재적회원'에 정관 제10조의 총회 구성원인 '본회 임원'이 포함되지 않는 문제, 그리고 총회 구성원인 회원은 6개월 이상 회비를 납부한 회원으로 제한되는데, 총회 정족수는 그보다 많은 재적(전체) 회원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총회의 구성원과 총회 결의 정족수의 기준'이 서로 정확하게 부합하지 않음.
- 2) 정관 제13조의 총회 의사정족수는 현재 재적 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되어 있는데, 회원이 입회 시 연락처를 제공하지 않아 총회 통지 및 출석 및 위임 의사를 확인이 불가능 한 경우와 회원에게 총회 통지를 하였으나 출석 및 위임에 관한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재적 회원의 과반에 달해 총회 개최를 어렵게 할 소지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민법에서는 총회의 성회요건인 의사정족수를 법인의 정관에서 달리 규정할 수 있다고 허용하고 있음.
- 3) 정관 제13조 단서는 "단, 정관 제12조 ②, ③항은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제12조 ②항은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이고, ③항은 본회 해산에 관한 사항임, 일반적으로 단체의 정관변경을 위한 결의요건은 일반 결의요건보다 다소 가중한 특별결의요건으로 두고 있기는 하지만, '재적회원의 3분의 2 이상'을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 정관 제13조 단서는 현실적으로 특별결의 요건이 실무적으로 다소 과중한 면이 있다고 볼 수도 있음.



정관 개정안

- ▲ 기윤실 정관 제10조(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본회의 **6개월 이상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한 회원**으로 한다."
- ▲ 기윤실 정관 제 13조(정족수) "총회는 **재적회원 중 6개월 이상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한 회원 3분의 1**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정관 제12조 ②, ③항은 **재적회원 중 6개월 이상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한 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김현아 사무처장이 소재지 관련 조항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다 (정관 제 2조)

현행 정관 조항

- ▲ 제2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동에 두고, 필요한 곳에 지역 기윤실을 둘 수 있다.



정관 개정안

- ▲ 제2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에 두고, 필요한 곳에 지역 기윤실을 둘 수 있다.

- 백종국 의장이 정관 개정안에 대한 채택 여부를 묻다.
- ▶ 만장일치로 찬성하다.

3) [정관] 제1절 총회 12조(의결) ②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안건2 : 임원 개선]

- 백종국 의장이 사임 · 연임 · 신임 임원 대상자를 소개하다.
 - ① 사임 : 김종구(세신감리교회 담임목사), 방선기(일터개발원 대표이사장), 송태근(삼일교회 담임목사), 정현구(서울영동교회 담임목사), 조수진(장신대 교수), 주광순(부산대 명예교수)
 - ② 연임 : 권혁률(성공회대 연구교수), 김정태(MY소셜컴퍼니 대표), 김홍섭(인천대 명예교수), 박제우(아이티엘 엔터프라이즈 상무), 박종근(서울모자이크교회 담임목사), 배종석(고려대 교수), 백종국(경상대 명예교수), 송인수((재)교육의봄 공동대표), 왕보현(남대문교회 장로), 이의용(교회문화연구소 소장), 장동민(백석대 교수), 조주희(성암교회 담임목사), 조흥식(서울대 명예교수), 최규창((주)호성로고스 대표, IVF서서울지방회 이사장)
 - ③ 신임 이사 : 광종철(전남기윤실 공동대표), 권수경(일원동교회 담임목사), 이충열(가천대 한의과대학 명예교수), 최현범(기독교통일학회 회장, 부산중앙교회 은퇴목사)
 - ④ 연임 등기이사 : 배종석(고려대 교수), 백종국(경상대 명예교수), 이의용(교회문화연구소 소장), 정병오(기윤실 공동대표, 서울시 교육청 오디세이학교 교사)
 - ⑤ 신임 등기이사 : 조성돈(기윤실 공동대표, 실천신대 교수, 기독교자살예방센터 라이프호프 대표)
- 백종국 의장이 임원 개선안에 대한 채택 여부를 묻다.
 - ▶ 만장일치로 찬성하다.

[섬기는 사람들 현황보고]

- 백종국 의장이 2024년 1차 정기 이사회에서 의결한 본부장 임면과 사무처장 임명을 보고하다.
 - ① 사임 : 조혜진(청년운동본부장, 상임집행위원)
 - ② 신임 : 구자창(청년운동본부공동본부장, 상임집행위원), 우미연(청년운동본부공동본부장, 상임집행위원), 김현아(사무처장, 상임집행위원)

[2024년 사업 · 예산계획 보고]

- 조성돈 공동대표가 2024년 사업 계획을 보고하다.
- 김현아 사무처장이 2024년 예산 계획을 보고하다.
- 백종국 의장이 2024년 사업 · 예산 계획에 대해 질문을 요청하고, 질문이 없음을 확인하다.
- 백종국 의장이 사업 · 예산계획에 대한 채택 여부를 묻다.
 - ▶ 만장일치로 승인하다.

[기타건의]

- 백종국 의장이 기타건의 사항에 대한 질문을 요청하고, 질문이 없음을 확인하다.

[폐회]

- 백종국 의장이 폐회 여부를 묻다.
 - ▶ 만장일치로 폐회에 동의하다.
- 2024년 회원총회를 마치다.



(끝)

